

법무부,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강화... ‘언론통제’ 비판도



〈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бри핑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한 뒤 나서고 있다〉

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겠다고 하며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.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 및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다. 다만 대선을 앞두고 정권 관련 수사 정보의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.

법무부는 지난 7월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법무부·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.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지만 бри핑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대책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.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“악의적 수사상황 유출은 반드시 엄단하겠다.”며 “공보관이 아닌 사

람이 수사 초·중기에 수사 내용을 여론몰이 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.”고 했다.

법무부는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상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더 엄격한 제한을 거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선다. 관련 조항은 언론 요청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개정안에서는 단계별로 공개 가능한 수사상황 기준이 마련된다.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·기업, 일시 및 장소, 죄명, 출국금지의 경우 공적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, 체포·구속의 경우 피의자, 죄명, 영장 기재 혐의사실 등을 알릴 수 있다. 법무부는 ‘공식적 공보를 확대해 특종보도 경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’이라고 설명했다. 하지만 수사상황으로 폭넓게 규정했던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공보가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.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“보도 경쟁을 하지 말고 공보하는 것만 받아쓰라는 것이냐?”고 지적했다.

다른 예외 규정도 강화된다. 기존에는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등이 우려될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.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, 디지털성범죄,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에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.

박 장관은 ‘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’의 심 사례로 ‘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’ ‘라임 사건’ ‘월성 원전 사건’ ‘옵티머스 사건’을 꼽았다. 모두 정권 및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던 사건이다. 박 장관은 유출 정황을 확인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“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다.”면서도 “강력한 추정을 갖고 자료에 답했다.”고 말했다. 자료에 거론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‘국민적 관심이 많아 보도된 사안을 마치 피의사실 유출인 것처럼 표현해 유감’이라고 밝혔다.

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해위증 의혹의 이례적 인권부 재배당, 임은정 당시 대검 검찰정책연구관 교체로 인한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가 부당했다고 정면 비판한 것이다. 대검에서는 그간 해당 논란에 대해 총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해왔다. 법무부는 사건 배당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.

(출처/국민일보)